

# 제 목:「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」국무회의 통과

-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, 저축은행 임원의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됩니다 -

#### < 개정 주요 내용 >

- ①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에서 사전신고로, 출장소 설치는 인가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됩니다.
- ②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이 고의·과실에서 고의·중과실로 완화

### 1. 개정배경

- ①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는 금융위 인가 사항이었으나,
  -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<sup>\*</sup>는 퇴색한 반면,
   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충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
    - \*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 및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
- ②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중 **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**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\*을 지고 있으나,
  - \*「상법」상 이사의 책임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은행과의 연대책임으로 타 금융기관 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음
  - **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**을 지우는 것은 **과도한 측면이**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
#### 2. 개정안 주요 내용

## ① 지점설치 규제 완화

○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,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(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, 사무소, 지사,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)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합니다.

#### 2 임원 연대책임 완화

○ 현행 고의·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"고의·중과실"로 일부 부담을 완화합니다.

#### 3. 향후 일정

□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**9월**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